

I. 금감원 상장기준(案) (2000. 1. 8일 현재)

1. 재평가유보금액(878억)을 전액 과거계약자 몫으로 하여 공익재단에 주식으로 출연

- '90년 재평가 당시의 자기자본(2,906억)에서 재평가 유보금액(878억)이 차지하는 비율(30.2%)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몫의 자본금으로 인정, 이를 전액 감독원장이 지정하는 공익재단에 주식으로 출연하도록
-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보험감독규정에 해당 조항을 신설함.

< 계약자지분율 >

'91. 3월말 현재

(억)

구 분		삼 성	(교 보)
주주지분	자 본 금	936	686
	자본잉여금	61	16
	이익잉여금	1,031	1,321
	소 계	2,028	2,023
계약자지분	자본잉여금	878	664
계		2,906	2,687
계약자지분비율		30.2%	24.7%

- 계약자에 주식배분은 무의결권주로 배분 가능
 - 기존주주의 경영권 보호 및 공익재단의 증여세 문제 경감을 위하여 계약자에 대한 주식배분은 무의결권우선주로 함
- 기존주주 및 회사의 공익재단 주식에 대한 Buy-back 조항 설치
 -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필요時 기존주주 또는 회사가 공익법인으로부터 우선매입이 가능하도록 공익법인 정관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

2. 상장전 부동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계약자몹을 주식으로 배분

- 부동산재평가차익 5,000억(99년중 추산)中 85%인 4,250억원을 주식으로 배분
 - 과거계약자몹 - 공익재단에 주식으로 출연
 - 현재계약자몹 - 현재계약자에게 주식으로 특별배당
- 발행주식 수량은 회사가 정하는 공모가격으로 환산하여 산정
- 현행 자산재평가법은 2000년말까지의 한시법이므로 생보사 상장요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험감독규정으로 부동산재평가를 의무화함.

3. 상장전 유가증권평가손익중 계약자몹 분배 검토

- 상장전에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중 계약자몹을 계약자에 분배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검토
 -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중 계약자몹을 배분하거나,
 - 기존 투자유가증권중 대부분을 상품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계약자몹을 배분하는 방안 검토

4. 이익 배분 기준에 있어 유배당상품의 주주몹의 비율을 현행 15%에서 10%로 하향 조정

5. 추가 보완 조치로, 상장 이후에 상호회사적 성격을 완전배제하기 위해

-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의 결손보전허용조항 삭제(現감독규정79조②항)
- 재평가차익의 사내유보 허용조항 삭제(現감독규정 81조①항)
- 해약식초과적립금의 계약자몹을 他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구분계리